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0.10.15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10.2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간이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판매)예정기간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 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 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 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share주식에 신탁 재산의 대 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 리규정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은 동일한 펀드에 대하여 해외로의 자금송금을 월1회로 제한하고 있어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일반적으로 40여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환매기준가 적용일 이후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클래스(92462), C1클래스(92463), C2클래스(92464), C3클래스(92466), C4클래스(92467), C5클래스(36165), Cw클래스(92471), Ce클래스(92469), Cf클래스(92470), Ci클래스(93189)]																		
2. 모집(판매)예정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펀드준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6.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 [모투자신탁의 해외업무위탁운용사] <table border="1"><thead><tr><th>투자신탁명칭</th><th>위탁운용회사</th><th>업무위탁범위</th></tr></thead><tbody><tr><td>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td><td>운용업무</td></tr><tr><td>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운용지시업무</td></tr><tr><td></td><td rowspan="3">단순매매주문업무 등</td><td>단순매매주문업무 등</td></tr><tr><td></td><td>운용업무</td></tr><tr><td></td><td>운용지시업무</td></tr><tr><td></td><td rowspan="2">단순매매주문업무 등</td><td>단순매매주문업무 등</td></tr></tbody></table>	투자신탁명칭	위탁운용회사	업무위탁범위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투자신탁명칭	위탁운용회사	업무위탁범위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업무																	
		운용지시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 주1) 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거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 이상(단, 삼성 CHINA 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40% 이하)	신탁재산 70%이상을 해외주식등에 투자하되, 중국 A주에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신탁
2)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 이상(단, 삼성 CHINA 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40% 이하)	신탁재산 70%이상을 중국의 대표기업과 향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등이 발행하는 중국의 A주에 투자
(3)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4)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5)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6)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헤지를 위한 모두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있음.
---------------	-----

나. 모두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삼성CHINA2.0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주식등	70%이상(A주에 의 투자는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에 한정)
채권	어음과 합산하 여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어음	채권과 합산하 여 40% 미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등	2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2)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주식등	70%이상(A주에 의 투자는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증권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것을 포함)
채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어음	3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중국의 A주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대부분의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A주 시장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 “A주” 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이하 ‘QFII’라 한다) 자격을 부여 받아 신탁재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된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되어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그 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중국 A주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그 주된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CSI300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x 100%
- (3)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운용역은 환율 관련 시황, 해지대금의 규모, 투자 대상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경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국통화 또는 다른 통화를 활용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형	주요 투자 전략
삼성CHINA2.0본토증권모 투자신탁[주식]	<p>1) 기본 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탁재산 70%이상을 중국본토 증권시장에 상장된(혹은 상장을 위한 공모주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회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③ 업종 배분 모델 및 종목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업종 투자순위 및 투자매력도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입니다. <p>2)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운용역은 환율 관련 시황, 해지대금의 규모, 투자 대상 국가 또는 관련 국가의 경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국통화 또는 다른 통화를 활용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p>

	<p>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법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수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비교 지수: CSI300 지수를 매일의 원화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300지수는 중국의 중증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 China Securities Index Co., LTD)에서 중국의상해와 심천거래소의 A주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거래량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300 개 내외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1,000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삼성CHINA본토대표주증권	<p>1) 기본 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에서 수행하고,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주)에서 수행합니다. <p>2) 주식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대표 핵심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 가치를 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 시장을 대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군 위주로 투자합니다. · 정부정책과 경제 발전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 예상되는 신성장 주식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시장 및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핵심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② 거시 경제 분석 및 업종 전망 분석을 통해 전략적 업종배분 전략을 실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운용역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업종 배분 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③ 신탁재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상장시장별 차별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중국본토 B주와 홍콩시장 및 기타 제3국 등의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펀드의 유동성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A주 관련 ETF 및 기타 중국 시장 관련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를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기타국가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환율에 대한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지 아니 할 것이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본토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 역시 중국 위안화 및 기타 국가 등의 통화의 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모두자신탁이 신탁재산을 해당 국가, 지역의 통화로 전환(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환전 과정도 포함)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율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위험 및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수익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금액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본토 등에 외국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 및 홍콩달러 등을 활용한 유효한 환헷지전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적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경우 환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환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환율변동 및 환매규모 등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수익자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회수 연기	이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약관상 기재된 환매대금지급일정대

위험	<p>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송금규제정책은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된 이후의 최초의 중국본토 투자 시점에서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이 제한되고 있으며, 과도한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5천만 미국달러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환매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외환관리규정은 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은 월 1회로 제한하고 있어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일 반적으로 40여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	--

주)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본토의 A주에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주1)}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주1)}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초과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4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의 최대편입비가 6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추구형) - A-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듀레이션 3년미만)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글로벌 채권 등인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는 국내투기등급채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투기등급이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투자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주2)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3)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삼성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임창규	1965	운용역	42개	11,1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2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 1989년 2월 연세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석사) - 1990년 4월 ~ 1992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 국내경제실 이코노미스트 - 1994년 5월 Ontario Theological Seminary,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Toronto, Canada)(신학석사) - 1996년 2월 ~ 1998년 9월 삼성생명 주식팀 이코노미스트 - 1998년 10월 ~ 1999년 12월 삼성자산운용 운용기획팀 이코노미스트 - 1999년 12월 ~ 2007년 12월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008년 1월 ~ 현 글로벌투자팀
윤상아	1983	운용역	34개	11,2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8월 고려대 경제학 - 2008년 1월 ~ 현삼성자산운용 채권4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투자팀 및 채권4팀이(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연도	최근 1년 (09. 10. 16 ~10. 10. 15)	최근 2년 (09. 02. 27 ~10. 10. 15)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09. 02. 27 ~10. 10. 15)
투자신탁	5.32 %	3.91 %			3.91 %
비교지수	1.58 %	8.69 %			8.69 %

주1) CSI 300 Index (KRW)*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Class)별 연평균 수익률은 위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종류별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 설명서 본문(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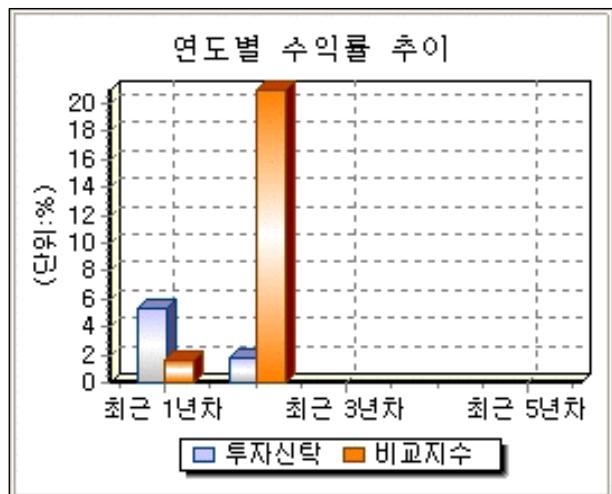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09. 10. 16 ~10. 10. 15)	최근 2년차 (09. 02. 27 ~09. 10. 15)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32 %	1.07 %			
비교지수	1.58 %	12.80 %			

주1) CSI 300 Index (KRW)*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Class)별 연도별 수익률은 위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종류별 연도별 수익률은 투자 설명서 본문(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전판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2%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1	제한없음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2	C1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3	C2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4	C3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5	C4클래스 가입자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w	Wrap 계좌전용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e	온라인용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f	집합투자기구 등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
Ci	50억 이상 가입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매입시	판매시	판매시	

주)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정구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등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파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765	1.8765	1.8765	0.5237
C1	0.85	1.5	0.06	-	0.0747	2.4847	2.4847	0.5417
C2	0.85	1.4	0.06	-	0.0523	2.3623	2.3623	0.1344
C3	0.85	1.3	0.06	-	실비	2.21	2.21	실비
C4	0.85	1.2	0.06	-	실비	2.11	2.11	실비

C5	0.85	1.1	0.06	-	실비	2.01	2.01	실비
Cw	0.85	0	0.06	-	실비	0.91	0.91	실비
Ce	0.85	1.29	0.06	-	0.0725	2.2725	2.2725	0.5296
Cf	0.85	0.06	0.06	-	실비	0.97	0.97	실비
Ci	0.85	0.3	0.06	-	실비	1.21	1.21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금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상기의 판매회사보수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Ce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적용 기간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9-06 ~ 2011-05-02	1.29
2011-05-03 ~ 2012-05-02	1.19
2012-05-03 ~ 2013-05-02	1.09
2013-05-03 ~ 신탁해지일까지	0.99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클래스	185,398	584,468	1,024,442	2,331,919
		선취 판매수수료 : 1,000만원 X 1.2% = 120,000원			
	C1클래스 가입자 로 자동 전환시	248,470	772,714	1,344,639	3,044,234
	Cw클래스	91,000	286,878	502,832	1,144,588
	Ce클래스	227,250	716,406	1,255,700	2,858,326
	Cf클래스	97,000	305,793	535,986	1,220,056
	Ci클래스	121,000	381,453	668,601	1,521,925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정율식으로 인하되는 판매회사 보수분은 미반영)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C5클래스로 자동 전환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2)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1)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236	1.1236	1.1236	0.1991
C1	0.49	0.95	0.06	-	0.021	1.521	1.521	0.2327
C2	0.49	0.86	0.06	-	0.0115	1.4215	1.4215	0.0459
C3	0.49	0.77	0.06	-	실비	1.32	1.32	실비
C4	0.49	0.69	0.06	-	실비	1.24	1.24	실비
Cw	0.49	0	0.06	-	실비	0.55	0.55	실비
Ce	0.49	0.72	0.06	-	0.0241	1.2941	1.2941	0.1771
Cf	0.49	0.06	0.06	-	실비	0.61	0.61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 삼성CHINA2.0본토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0.0388	1.1388	1.1388	0.1269

C1	0.49	0.95	0.06	-	0.0384	1.5384	1.5384	0.1211
C2	0.49	0.86	0.06	-	실비	1.41	1.41	실비
C3	0.49	0.77	0.06	-	실비	1.32	1.32	실비
C4	0.49	0.69	0.06	-	실비	1.24	1.24	실비
Cw	0.49	0	0.06	-	0.0498	0.5998	0.5998	0.491
Ce	0.49	0.72	0.06	-	0.037	1.307	1.307	0.1307
Cf	0.49	0.06	0.06	-	실비	0.61	0.61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3) 삼성CHINA2.0본토카멜레온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 CHINA2.0 본토카멜 레온증권 자투자신 탁 제2호 [주식]	0.85	0.89	0.06	-	0.0745	1.8745	1.8745	0.2737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4)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0.0779	1.8779	1.8779	0.5161
C1	0.85	1.5	0.06	-	0.0786	2.4886	2.4886	0.5111
C2	0.85	1.4	0.06	-	0.0497	2.3597	2.3597	0.1433
C3	0.85	1.3	0.06	-	실비	2.21	2.21	실비
C4	0.85	1.2	0.06	-	실비	2.11	2.11	실비
C5	0.85	1.1	0.06	-	실비	2.01	2.01	실비

Cw	0.85	0	0.06	-	0.0644	0.9744	0.9744	0.4352
Ce	0.85	1.29	0.06	-	0.0764	2.2764	2.2764	0.474
Cf	0.85	0.03	0.06	-	0.0788	1.0188	1.0188	0.5988
Ci	0.85	0.3	0.06	-	0.0665	1.2765	1.2765	0.3878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상기의 판매회사보수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Ce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적용 기간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9-06 ~ 2011-05-02	1.29
2011-05-03 ~ 2012-05-02	1.19
2012-05-03 ~ 2013-05-02	1.09
2013-05-03 ~ 선택해지일까지	0.99

5)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실비	1.8	1.8	실비
C1	0.85	1.5	0.06	-	실비	2.41	2.41	실비
C2	0.85	1.4	0.06	-	실비	2.31	2.31	실비
C3	0.85	0.99	0.06	-	실비	1.9	1.9	실비
C4	0.85	0.9	0.06	-	실비	1.81	1.81	실비
Ce	0.85	0.95	0.06	-	실비	1.86	1.86	실비
Cf	0.85	0.1	0.06	-	실비	1.01	1.01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6) 삼성CHINA본토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	0.89	0.06	-	실비	1.8	1.8	실비

C1	0.85	1.5	0.06	-	실비	2.41	2.41	실비
C2	0.85	1.4	0.06	-	실비	2.31	2.31	실비
C3	0.85	0.99	0.06	-	실비	1.9	1.9	실비
C4	0.85	0.9	0.06	-	실비	1.81	1.81	실비
Ce	0.85	0.95	0.06	-	실비	1.86	1.86	실비
Cf	0.85	0.1	0.06	-	실비	1.01	1.01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7)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실비	1.1	1.1	실비
C	0.49	0.95	0.06	-	실비	1.5	1.5	실비
Ce	0.49	0.72	0.06	-	실비	1.27	1.27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8) 삼성CHINA본토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49	0.55	0.06	-	실비	1.1	1.1	실비
C	0.49	0.95	0.06	-	실비	1.5	1.5	실비
Ce	0.49	0.72	0.06	-	실비	1.27	1.27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9) 삼성퇴직연금CHINA본토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퇴직 연금 CHINA본 토포커스 40증권자 투자신탁 제1호[채 권혼합]	0.45	0.75	0.06	-	실비	1.26	1.26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10) 삼성퇴직연금CHINA본토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퇴직 연금 CHINA본 토포커스 40증권자 투자신탁 제2호[채 권혼합]	0.45	0.75	0.06	-	실비	1.26	1.26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2. 과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 가.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지방소득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나.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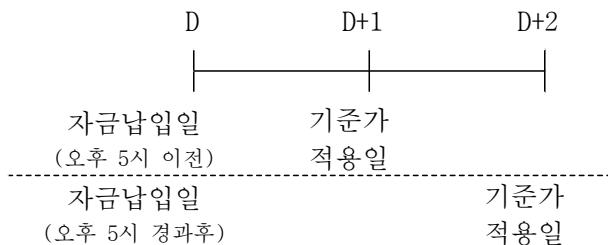
가.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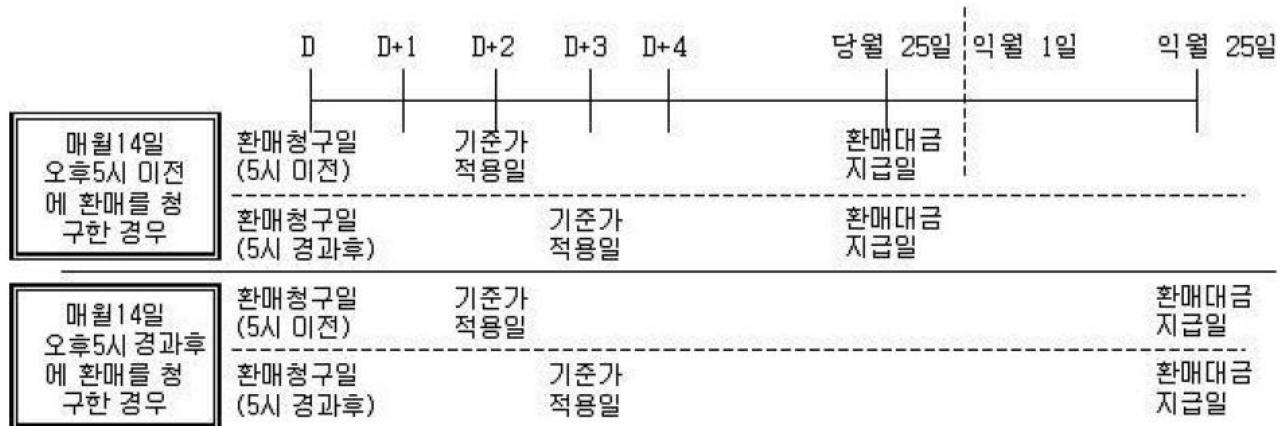
매입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 1) 매월14일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다만, 이 환매대금 지급일이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이날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매월14일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다만, 이 환매대금 지급일이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이날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매월14일 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다만, 이 환매대금 지급일이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이날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매월14일 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환매청구일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 오후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다만, 이 환매대금 지급일이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이날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투자신탁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 1 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2기 (2010. 8.26)	1기 (2010. 2.26)
자산총계	7,780	5,563
운용자산	7,775	5,283
증권	7,542	5,203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233	79
기타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6	280
부채총계	6	45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6	45
자본총계	7,774	5,519
원본	8,141	5,276
수익조정금	-9	-459

항목	2기 (2010. 8.26)	1기 (2010. 2.26)
이익잉여금	-358	701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2기 (2010. 2.27~2010. 8.26)	1기 (2009. 2.27~2010. 2.26)
운용수익	-357	702
이자수익	2	2
배당수익	0	237
매매/평가차익(손)	-361	449
기타수익	2	15
운용비용	0	1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0	1
당기순이익	-358	701
매매회전율	0.00	0.00